

국회입법조사처 정보공개심의회 내규

2008.3.20 국회입법조사처 내규 제8호 제정
일부개정 2009.5. 4 국회입법조사처 내규 제15호
일부개정 2017.7.10 국회입법조사처내규 제70호
개정 2021.12.31 국회입법조사처내규 제105호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 12조 및 「국회정보공개규칙」 제10조제5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국회입법조사처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09.5.4, 2021.12.31>

② 위원장은 정치행정조사실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기획관리관과 국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위촉하는 5명으로 한다.<개정 2009.5.4, 2021.12.31>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)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총무담당관이 된다.<개정 2017.7.10>

③ 간사는 회의록 및 제6조제1항의 의견서를 작성하고, 그 밖의

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자료 및 의견요청)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견서) ① 「국회정보공개규칙」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의견서에는 정보공개 여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심의회는 제1항의 의견서를 해당 정보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, 의견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로 정한다.

부칙<제8호, 2008.3.20>

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호, 2009.5.4>

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호,2017.7.10>

이 내규는 결재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5호,2021.12.31>

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